

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

제정 2003. 9. 22 조례 제468호
개정 2004. 12. 31 조례 제548호(제명개정 포함)
2005. 10. 5 조례 제67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]

제2조(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,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<개정 2005. 10. 5>

[전문개정 2004. 12. 31]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및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>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으로 하고,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만료 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>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,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>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>

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>

제7조(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임명 보고) 구청장, 읍·면·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12. 31, 2005. 10. 5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12. 3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72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